

영등포구의회
제149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10. 26.



行 政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■ 개정이유

- 『통합방위법시행령』 제7조에 따라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추가 구성하고, 『통합방위법』에 따른 동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

■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3항에는 제213연대 제1대대장 및 영등포지역 기무담당관을 추가
- 안 제10조제1항에는 동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주무담당 주사에서 동장으로 격상 운영
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

■ 검토의견

●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

- 안 제3조제3항에

우리구 관할지역의 실질적 통합방위 작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제213연대 제1대대장 및 국군기무부대 영등포지역 담당관을 추가

- 안 제10조제1항

『통합방위법』 개정에 따라 동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주무 담당주사에서 최종 지휘결정권이 있는 동장으로 격상하였음

● 본 조례안은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맞게 개정하고, 제명을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춰 띄어 쓰기로 표기하고, 기타 내용 중 “규정에 근거하여”를 “에 따라”로 “인”을 “명”으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10. 26.

보고자 : 권 오 운

관 계 법 령

■ 통합방위법

제5조 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으로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시·도 협의회"라 한다)를 두고, 그 의장은 시·도지사가 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도 협의회와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·도 협의회에 한한다.

1.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(이하 "취약지역"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
2. 통합방위 대비책
3.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
4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
5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

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9.5.21]

제9조 (통합방위 지원본부) ①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·읍장·면장·동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·읍·면·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.

② 시·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·군·구·읍·면·동 통합방위 지원본부(이하 "각 통합방위 지원본부"라 한다)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
 2.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
 3. 국가방위요소의 육성·지원
 4.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
 5.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〔전문개정 2009.5.21〕

■ 통합방위법시행령

제7조 (지역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법 제5조 제1항의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 제2항의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〈개정 1999.3.31, 2006.5.30〉

1.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2.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3. 국가정보원관계자
4. 지방검찰청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5.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6.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
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8. 지방병무관서의 장
9. 교육감 또는 교육장
10. 지방의회 의장
11. 지방소방관서의 장
12.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

- ②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,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[제6조제2항](#)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③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(이하 "지역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1. 지역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
 2.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 3.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·조정
- ④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.
- ⑤법 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6.5.30>
1. 통합방위작전시 차량·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
 2. 향토예비군·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·계몽 및 지원 대책
 3. 취약지역 대비책
 4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- ⑥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영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6.5.30>
1.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 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·관·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